회계감사기준위원회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2008.8.28.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목 차

I. 개요	. 및 범위 문단번호
	목적과 범위 1-4
	적용 제외
	다른 법규나 기준에 의한 예외 10
II. 일투	반적인 고려사항
	전문가적 적격성 11- 12
	업무의 성격과 위험, 의뢰인의 기대
	공정성
	독립성과 가치평가 15
	수행할 업무에 대한 이해 내용의 문서화 16-18
	범위의 제약이나 제한 19
	전문가의 활용
III. 업	무의 수행
	가치추정업무의 유형 21
	가설적 상황 22
	가치평가업무 23-42
	후속사건
	문서화
	가치산정업무
IV. 결	과의 보고
	가치평가보고서
	가치산정보고서
	구두에 의한 보고
부칙	
보론	1.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의 제정경위
	2. 법규 등에 의한 평가업무의 보고서 예시
	3. 가치평가서비스에 대한 가정과 제약조건의 예시
	4. 용어의 해설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I. 개요 및 범위

목적과 범위

- 1. 이 기준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사업, 사업의 지분, 유가증권, 무형자산, 유형자산 등(이하 "가치추정대상")에 대하여 가치평가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기본원리와 주요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가치평가서비스란 가치추정대상에 대하여 그 가치를 추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러한 가치추정업무는 가치평가업무 또는 가치산정업무의 형태로 수행될 수 있다. 그리고 가치추정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가치평가자¹ 또는 평가자라고 한다(문단 21).
- 3. 평가자는 이 기준에 따라 가치추정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법규, 한국공인회계사회 가 제정한 공인회계사윤리기준 등 해당 업무에 관련된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4. 평가자는 가치를 추정할 때 이 기준에서 정하는 가치추정접근법과 방법²을 적용하며,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행사한다. 전문가로서의 판단은 가치추정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이다.

적용 제외

- 5. 이 기준은 평가자가 재무정보의 감사·검토 등 인증업무의 일부로서 특정 대상의 가치를 추정하거나, 추정재무정보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또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각각 회계감사기준이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추정재무정보 검토업무기준 및 재무정보 작성업무기준을 적용한다.
- 6. 이 기준은 평가자가 가치추정의 의뢰인 또는 제3자로부터 추정대상의 가치를 제시 받았으나, 이 기준의 가치추정접근법이나 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7. 이 기준은 기업경영자가 내부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종업원에게 가치추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8. 이 기준은 예를 들어 이익의 상실과 같이 경제적인 피해만을 결정하기 위한 업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이러한 업무 내에 가치를 추정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이 기준의 가치평가자라는 용어는 가치평가업무뿐만 아니라 가치산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² 가치추정대상과 가치추정접근법과 방법이라는 일반용어는 가치평가업무의 경우 구체적으로 평가대상 및 평가접 근법과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9. 이 기준은 가치의 추정에 이르지 않는 기계적인 계산업무, 즉 이 기준에서 정하는 가치추정접근법과 방법,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업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 이 기준은 가치추정에 필요한 정보의 입수나 이용이 실행 가능하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않아 이 기준에서 언급하는 가치추정접근법과 방법을 준수할 수 없을 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른 법규나 기준에 의한 예외

10. 평가자가 「증권거래법」 등 법규 또는 다른 기준에서 요구하거나 정하고 있는 가치 추정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법규 또는 기준의 내용 중 일부가 이 기준의 가치추정 절차나 보고방법과 다를 경우, 평가자는 해당 법규 또는 기준의 추정절차나 보고방법을 적용한다. 단,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따른다. 예를 들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합병, 주식교환, 이전, 분할, 자산 및 영업양수도 등에 관련된 가치추정업무를 수행할 경우 보고서 예시는 <보론 2>와 같다.

II. 일반적인 고려사항

전문가적 적격성

- 11. 평가자는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전문가적 적격성 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평가자는 가치추정업무를 수행할 때 자료를 파악·수집·분석하고 적절한 가치추정접근법 및 방법을 고려하고 선택하며,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치평가의 원리와 이론에 대한 지식, 그리고 실무적 적용에 대한 일정수준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12. 평가자는 전문가적 적격성을 가지고 가치추정업무를 완료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결정할 때, 최소한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가치추정대상 회사와 그 업종
 - 2) 가치추정대상
 - 3) 가치추정 기준일
 - 4) 가치추정업무의 범위
 - 업무의 목적
 - 해당 업무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정과 제약조건(문단 18)
 - 공정가치, 공정한 시장가치 등 적용될 가치기준, 계속기업 가정 등 가치에 대하여 적용할 전제조건
 - 가치추정보고서의 유형, 보고서의 이용목적과 의도된 이용자, 보고서 이용 의 제한
 - 5) 가치추정대상 또는 가치추정업무에 적용되는 법규나 기타의 기준

업무의 성격과 위험, 의뢰인의 기대

- 13. 평가자는 수행할 업무의 성격과 위험 및 의뢰인의 기대가 무엇인지 이해할 때, 문단 12의 사항뿐만 아니라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가치추정업무에 대하여 제안된 수행조건
 - 2) 의뢰인에 관한 사항
 - 3) 가치추정대상이 지분인 경우, 지배력에 관한 특성과 시장성의 정도
 - 4) 가치추정업무에 있어 절차적으로 요구되는 사항, 업무수행절차가 의뢰인에 의하여 또는 의뢰인과 평가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환경 요인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될 정도
 - 5) 가치추정보고서 및 추정된 가치의 이용과 제한에 관한 사항
 - 6) 추정된 가치를 갱신해야 될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공정성

14. 평가자는 공인회계사유리기준에서 정하는 공정성에 관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독립성과 가치평가

15. 평가자는 수행하고자 하는 가치추정업무가 공인회계사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금지업무 또는 수행이 제한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수행할 업무에 대한 이해 내용의 문서화

- 16. 평가자는 수행할 업무에 대하여 의뢰인과 상호 이해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해는 서면 형태가 바람직하다. 만약 의뢰인과 상호 이해한 내용이 구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면 평가자는 이를 업무수행 조서에 적절하게 기록함으로써 문서화 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러한 이해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 17. 이와 같은 이해는 평가자와 의뢰인이 각자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과 기대에 대한 오해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이해에는 최소한 가치추정업무의 성격과 의도 및 목적, 의뢰인의 책임, 평가자의 책임, 적용할 가정과 제약조건, 발행할 보고서의 유형, 그리고 적용될 가치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정과 제약조건

18. 가치추정업무의 전형적인 가정과 제약조건은 <보론 3>에 예시되고 있다. 이러한 가정과 제약조건은 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한다(문단 52(12), 68(7), 71(13)).

범위의 제약이나 제한

19. 평가자의 가치추정업무에 대한 범위의 제약이나 제한은 계약단계에서 알려진 것일 수도 있고 업무의 수행 중에 새롭게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제약이나 제한은 평가자의 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전문가의 활용

20. 평가자는 가치추정업무를 수행할 때 부동산이나 설비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업무에 의존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자는 가치평가서비스에 대한 가정과 제약조건에 외부전문가의 업무에 대하여 평가자가 부담하고 있는 책임의 정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평가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평가자의 보고서에 외부전문가의 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다.

III. 업무의 수행

가치추정업무의 유형

- 21. 가치추정업무는 가치평가업무와 가치산정업무로 구분된다. 가치평가업무는 가치산 정업무보다 더 많은 절차를 필요로 하며 가치평가업무에서는 가치의 평가결과가, 가치산정업무에서는 가치의 산정결과가 도출된다.
 - 1) 가치평가업무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수행된다. 이때 평가결과는 단일 금액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로 나타낼 수도 있다.
 - ① 업무의 성격이 대상에 대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 ② 평가자가 가치를 추정함에 있어서 문단 23 내지 문단 45의 절차를 수행하며, 상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가치평가접근법과 방법을 자유롭게 적용할수 있는 경우
 - 2) 가치산정업무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수행된다. 이때 산정결과는 단일 금액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로 나타낼 수도 있다. 가치산정업무를 수행할 때는 가치평가업무의 모든 절차들이 요구되지는 않으며, 가치평가절차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문단 46).
 - ① 평가자와 의뢰인이 가치추정의 대상에 대하여 적용할 가치산정접근법과 방법 및 수행할 절차의 범위에 대해 상호 합의를 한 경우
 - ② 평가자가 위에서 합의한 내용을 준수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경우

가설적 상황

22. 경우에 따라 추정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적 상황이 요구될 수 있다. 평가자가 가치추정 과정에서 가설적 상황을 적용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을 포함시키는 목적을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문단 52(14), 71(15), 74).

가치평가업무

- 23. 평가자가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할 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의 분석(문단 25 내지 문단 30)
 - 적합한 가치평가접근법과 방법을 고려한 후 적용(문단 31 내지 문단 42)
 - 적절한 문서화의 유지(문단 44 내지 문단 45)

24. 문단 23에서 가치평가업무의 기본적인 절차를 제시하였으나 가치의 평가는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 갱신, 분석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가치평가 절차는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그 순서를 적절히 변경할 수 있다.

평가대상의 분석

- 25. 평가자는 평가대상의 분석을 통해 다양한 평가접근법과 방법을 고려하고 적용할 수 있다. 평가대상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할 때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다.
 - 평가대상의 성격
 - 평가업무의 범위
 - 평가기준일
 - 평가의 용도
 - 적용될 가치기준
 - 가치에 대해 적용할 전제조건
 - 가정과 제약조건
 - 적용되는 법규나 기타 전문적인 기준
- 26. 평가자는 평가대상을 분석할 때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의 유형이나 입수가능성, 유의성의 정도는 평가대상에 따라 가변적이다.

비재무정보

- 27. 평가자는 가치평가업무에 적용 가능하고 입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대상 회사를 이해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비재무정보를 충분히 입수하여야 한다.
 - 회사의 성격, 배경 및 연혁
 - 설비
 - 조직구조
 - 경영진(이사회, 임원 및 주요 직원)
 - 지분의 종류와 의결권
 - 공급하고 있는 재화나 용역
 - 경제적인 환경
 - 지역별 시장현황
 - 해당산업의 시장현황
 - 핵심 고객과 거래처
 - 경쟁
 - 사업위험
 - 전략과 미래 계획
 - 법규 환경

지분에 관한 정보

- 28. 평가자는 적용 가능하고 입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 게 평가대상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 지분의 종류를 파악하고 동 지분이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함
 - 타 지분소유자의 지분성격을 분석하여 평가대상 지분의 가치에 미치는 잠재적 인 영향을 평가함
 - 지분의 종류와 의결권의 내용을 이해함
 - 무형자산에 포함되어 있거나 배제되어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이를 이해함
 - 평가대상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의 사항을 이해함
 - 사업, 사업의 지분 또는 유가증권 : 주주협약, 지분협약, 운영협약, 투표권 위임협약, 매수·매도협약, 차입약정, 제약사항, 소유자나 평가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의 계약상 의무나 제약사항
 - 무형자산 : 법적 권리, 라이선스 협약, 서브라이선스 협약, 비공개협약, 개발 권리, 상업화 또는 이용에 대한 권리, 기타 계약 상의 의무
 - 유형자산 : 소유권 유무, 매수 또는 매도옵션 유무, 재평가 여부 등

재무정보

- 29. 평가자는 적용 가능하고 입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대상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재무정보를 입수하여야 한다,
 - 적절한 기간의 역사적 재무정보(연차 및 중간재무제표, 핵심 재무비율 및 통계 치 등)
 - 예산, 재무예측, 재무추정 등 추정재무정보
 - 관련 기간의 비교 요약재무제표나 비교 요약정보
 - 적절한 기간의 평가대상회사의 비교 백분율 재무제표
 - 관련 기간의 평가대상회사가 속한 산업의 비교 백분율 재무정보
 - 적절한 기간의 법인세 등 세무정보
 - 복리후생을 포함한 주주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정보
 - 주요 임직원에 관한 정보
 - 다음의 질문에 대한 경영자의 답변
 - 불리한 계약과 유리한 계약
 - 우발항목이나 부외자산, 부외부채
 - 종전에 회사 지분을 양도한 내용
- 30. 평가자는 이와 같은 정보들이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지 결정하기 위해 이를 숙지, 평가하여야 한다.

가치평가접근법과 평가방법

- 31. 평가자는 가치평가를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이 가장 보편적인 세 가지 접근법을 고려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산기준 평가방법은 사업, 사업의 지분, 유가증권의 평가 에 이용되고 원가기준 평가접근법은 무형자산의 평가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 이익기준 평가접근법
 - 자산기준 평가접근법 또는 원가기준 평가접근법
 - 시장기준 평가접근법
- 32. 평가자는 해당 평가업무에 적합한 평가접근법과 각 평가접근법 별 세부방법을 적용 하여야 한다. 평가접근법과 방법에 대한 일반지침은 문단 33 내지 문단 41에 제시되고 있으나, 세부적인 평가접근법이나 방법 그리고 그 구체적 적용에 대하여는 이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 33. 이익기준 평가접근법에서는 이익이나 현금흐름 등 효익을 자본화하거나 미래의 효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평가자는 이러한 방법을 적용할 때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이익이나 현금흐름 등 효익을 자본화 하는 방법 평가자는 이 방법을 적용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정상이익으로의 조정
 - 비경상적인 수익과 비용 항목
 - 세금
 - 자본구조 및 자본조달의 비용
 - 적절한 투자 금액
 - 비 혀금항목
 - 할인율 및 자본화율을 계산하기 위해 적용된 위험에 대한 질적 판단
 - 이익이나 현금흐름 등 미래 효익의 성장이나 감소에 대한 예상
 - 2) 이익이나 현금흐름 등 미래효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 평가자는 이 방법을 적용할 때 위 1)의 이익이나 현금흐름 등 효익을 자본화하 는 방법에서 고려한 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한 다.
 - 예측이나 추정에 대한 가정
 - 이익이나 현금흐름의 예측이나 추정
 - 작존가치
 - 3) 평가자는 관련이 있는 경우 무형자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 잔존 내용연수
 - 무형자산의 현재의 이용 및 미래에 예상되는 이용
 - 무형자산에 귀속되는 권리
 - 무형자산의 전체 내용연수 중 경과내용연수
 - 무형자산에 대한 적절한 할인율

- 투하자본 또는 기여자산에 대한 적절한 지불비용(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무형자산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연구개발이나 마케팅 비용
- 무형자산에 대한 이익의 배분(예를 들어 증분이익, 잔여이익 또는 분할이 익 등)
- 해당 분석에서 기간 별로 세금효과가 포함되고 있는지 여부
- 다년간의 초과이익에 대한 할인
- 시장에서의 로열티
- 회피가능 로열티

자산기준 평가접근법과 원가기준 평가접근법

- 34. 자산기준 평가접근법에서는 조정순자산법이 자주 이용된다. 사업이나 사업의 지분, 유가증권을 평가할 때 조정순자산법을 이용한다면 가치의 전제조건과 관련되는 다 음 정보를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 자산과 부채의 파악
 - 해당 자산과 부채의 개별적 또는 전체적인 가치
 - 청산원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35. 무형자산을 평가하기 위해 원가기준 평가접근법을 이용할 때는 재생산원가, 대체원 가 등 이용될 원가의 유형과,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절한 형태의 상각이나 진부 화 그리고 잔존 내용연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기준 평가접근법

- 36. 사업이나 사업의 지분, 유가증권에 자주 이용되는 세 가지 시장기준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 유사 상장기업 비교법
 - 유사 기업거래 비교법
 - 평가대상기업 내의 유사 매각거래 비교법

무형자산에 자주 이용되는 세 가지 시장기준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 비교가능 제3자 거래법(유사한 무형자산의 제3자간 거래 또는 라이선스에 기초 하는 방법)
- 비교가능 이익률법(유사한 무형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가득한 이익률을 평가대상기업의 이익률과 비교하는 방법)
- 회피가능 로열티법(가상의 제3자가 해당 무형자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무형자산을 이용하고 있는 평가대상기업이 그 제3자에게 지급할 로열티(흔히 수익의 일정비율로 표시)에 기초하는 방법)

예를 들어 비교가능 이익률법과 같이 유사한 무형자산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에는, 평가자는 적용 가능하다면 평가대상 무형자산의 잔존 내용연수를 유사한 무형자산 의 내용연수와 비교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 37. 평가자가 가치평가를 위한 가격배수나 지표를 결정하기 위해 문단 36의 방법 또는 기타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양적, 질적인 비교
 - 제3자간의 거래와 가격
 - 거래일 등을 고려한 시장자료의 목적적합성
- 38. 평가자는 평가에 이용된 평가방법의 논거와 그 근거를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문단 47).
- 39. 경험적 평가. 경험적 평가는 기술적으로는 평가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지 만, 일부 평가자는 평가업무에서 과거의 경험치나 특정 업종의 벤치마크 지표(이하이들을 총칭하여 "경험적 평가"라 한다)를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경험적 평가는 적용된 평가방법들의 합리성 점검의 목적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평가대상의 가치를 추정할 때 경험적 평가를 유일한 방법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가치의 조정

- 40. 평가자는 가치를 평가할 때 조정전 가치에서 할인, 할증 등 가치조정을 해야 할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 사업의 지분 및 유가증권의 경우 시장성 또는 유동성의 결여나 지배력의 결여에 따른 할인 등이 있을 수 있고, 무형자산의 경우 진부화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 41. 이익기준 평가접근법을 적용하여 지배력이 있는 지분의 가치를 평가할 경우, 비영 업자산, 비영업부채, 그리고 유휴 중이거나 결함이 있는 영업자산은 영업자산에 기초한 가치의 계산에서 배제함으로써 이를 영업실체의 가치에 가산 또는 차감시켜야한다. 반면, 이익기준 평가접근법을 적용하여 지배력이 없는 지분을 평가할 경우, 이러한 지분이 영업실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평가한 후, 그 영향의 정도에 따라 이러한 항목들의 가치를 영업실체의 가치에서 조정하거나 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자산기준이나 원가기준 평가접근법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자산이나 부채를 별도로 분리하여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가치평가의 도출

- 42. 평가자는 가치평가의 결과를 도출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평가에 사용된 서로 다른 평가접근법과 방법의 결과에 대하여 상호 관련성을 검토하고 비교한다.
 - 2) 평가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평가접근법과 방법에서 얻은 결과들의 신뢰성을 평가한다.
 - 3) 위 1)과 2)에 근거하여 ① 단일 평가접근법과 방법에 의한 결과를 반영할 것인지, ② 복수의 평가접근법과 방법에 의한 결과의 조합을 반영할 것인지 결정한다.

후속사건

43. 평가기준일은 평가자가 평가대상의 가치를 추정하여 그 결론을 내리는 특정일이다. 일반적으로 평가자는 평가기준일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과 그때까지 발생한 사건만을 고려해야 한다. 이 때 평가기준일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평가기준일 이후 발생될 수도 있는데, 이를 후속사건이라고 한다. 후속사건은 평가기준일 이후 발생한 상황과 같이 평가기준일에 알려지지 않았거나 알 수 없었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치평가는 그러한 사건이나 상황을 반영하여 갱신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가치평가는 특정시점, 즉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수행되며 이 문단에서설명하는 후속사건은 평가기준일 현재 결정된 가치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평가보고서에는 그러한 사건이나 상황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치평가가평가기준일 이후에도 의도된 이용자에게 중요한 경우에는, 평가자는 후속사건의 특성이나 유의성의 정도 및 평가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문단52(16), 71(18), 74와 같이 평가보고서의 별도문단에 후속사건을 기술할 수도 있다.다만 이때, 후속사건과 관련된 정보는 정보목적으로만 제공되는 것일 뿐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야 한다.

문서화

- 44. 문서화는 수집·분석한 정보, 수행한 절차, 고려하였거나 실제 적용한 평가접근법과 방법, 그리고 가치의 평가결과 등 주요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다. 문서화의 양, 유형이나 내용에 관한 것은 평가자의 전문적 판단의 문제이다. 문서화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평가대상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수집, 분석 한 정보(문단 25 내지 문단 30)
 - 가정과 제약조건(문단 18)
 - 평가자의 업무범위 또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입수의 제약이나 제한(문단 19)
 -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적용한 평가를 위한 가정
 - 가치평가에 고려한 제반 평가접근법과 방법
 - 가치평가에 실제 적용한 평가접근법과 방법(그 논거와 근거를 포함)
 - 후속사건과 관련하여 평가자가 고려한 정보(문단 43,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가치평가에 있어서 경험적 평가를 적용한 경우 이용한 자료의 원천과 그러한 평가를 적용한 방법(문단 39)
 - 기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고려한 사항
- 45. 평가자는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경우 평가관련 문서를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치산정업무

46. 평가자는 가치산정업무를 수행할 때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의뢰인에 관한 사항
- 2) 산정대상의 파악
- 3) 산정대상이 지분인 경우, 지배력이 있는지 여부와 시장성의 정도
- 4) 산정된 가치의 목적과 용도
- 5) 가치산정보고서의 의도된 이용자와 이용의 제한
- 6) 가치산정의 기준일
- 7) 가치에 대해 적용할 전제조건
- 8) 적용될 가치기준
- 9) 가치산정에 이용된 정보의 원천
- 10) 의뢰인과 합의한 가치산정접근법과 방법
- 11) 후속사건(문단 43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자는 이외에도 문단 44 및 문단 45에 열거된 문서화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문서화의 양과 유형 및 내용은 평가자의 전문적 판단의 문제이다.

IV. 결과의 보고

- 47. 평가자는 의뢰인에게 문서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가치평가의 결과나 가치산정의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분쟁절차를 위하여 발행하는 보고서에는 이 보고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문단 50).
- 48. 평가자는 가치추정업무를 수행한 결과로 세 가지 유형의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다. 즉, 가치평가업무의 경우에는 가치평가보고서 또는 요약평가보고서를, 가치산정업무의 경우에는 가치산정보고서를 발행한다.

가치평가업무

- 1) 가치평가보고서 : 이 보고서는 가치평가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만 발행되며, 가치산정의 결과를 보고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문단 51).
- 2) 요약평가보고서 : 이 보고서는 가치평가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만 발행되며, 가치산정의 결과를 보고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문단 71).

가치평가업무에서 위 두 가지 유형의 보고서 중 어떤 형태로 발행할 것인지는 평가 자와 의뢰인이 상호 합의한 바에 따른다.

가치산정업무

- 3) 가치산정보고서 : 이 보고서는 가치산정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만 발행되며, 가치평가의 결과를 보고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문단 73).
- 49. 평가자는 가치평가보고서에 보고서의 이용에 대한 제약사항을 나타내어야 한다. 이 러한 제약사항은 보고서 이용자의 제한 및 이러한 이용자에 대한 보고서 이용의 제 한 등이 포함된다(문단 65(4)).

분쟁 절차의 경우 보고기준의 배제

50. 법원이나 중재인을 위한 가치평가나 행정소송의 처리를 위한 가치추정의 경우에는 이 기준의 문단 47 내지 문단 49, 문단 51 내지 문단 78의 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III. 업무의 수행"의 규정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보고서는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형식에 따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가치평가보고서

- 51. 가치평가보고서는 의도된 이용자들이 평가자의 가치평가에 기초가 되는 자료, 추론, 분석을 이해할 수 있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고서 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 가치평가보고서의 발행서한
 - 목차
 - 개요
 - 정보의 원천
 - 평가대상회사 및 관련 비재무정보의 분석
 - 재무제표와 재무정보의 분석
 - 고려한 제반 평가접근법과 방법
 - 실제 적용한 평가접근법과 방법
 - 가치평가 조정사항
 - 비영업자산, 비영업부채, 유휴 중이거나 결함이 있는 영업자산(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보고서 이용 상의 유의사항
 - 가치추정의 조정내역과 그 결과
 - 별첨 및 부표

위에서 열거한 사항과 이에 대하여 문단 52 내지 문단 77에서 언급하는 세부적인 정보는 평가자의 재량에 따라 보고서의 본문 또는 보고서의 다른 부분에 기술할 수 있다.

개요

- 52. 개요부분은 가치평가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기술한다. 개요에 포함되는 정보는 보고서의 의도된 이용자가 가치평가업무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수행한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1) 의뢰인에 관한 사항
 - 2) 평가된 가치의 목적과 용도
 - 3) 평가된 가치의 의도된 이용자
 - 4) 평가대상회사
 - 5) 평가대상의 기술
 - 6) 평가대상이 지분인 경우, 지배력이 있는지 여부와 시장성의 정도
 - 7) 평가기준일
 - 8) 보고서일
 - 9) 보고서의 유형에 대한 언급(문단 51)
 - 10) 가치에 대해 적용한 전제조건
 - 11) 적용된 가치기준
 - 12) 가정과 제약조건들(별첨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문단 18)
 - 13) 평가자의 업무수행 범위나 분석을 위한 자료입수의 제약이나 제한(문단 19)
 - 14) 가치평가업무에 채택된 가설적 상황 및 그 채택기준(문단 22)
 - 15) 가치평가업무에 전문가의 업무가 이용된 경우, 평가자가 그 결과를 어떻게 의 존했는지에 대한 설명(문단 20)
 - 16) 후속사건의 기술(문단 43에서 말하는 특정한 상황에서)
 - 17) 타 법규나 기준의 요구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것과 다르게 평가를 수행하 거나 보고하는 경우 그 내용(문단 10)
 - 18) 보고서 이용자가 평가자의 수행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기타의 추가적인 정보

개요부분에 이상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보고서의 다른 부분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정보의 원천

- 53. 이 부분에서는 가치평가에 이용된 정보의 관련 원천을 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 1) 사업, 사업의 지분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가치평가의 경우, 평가대상회사의 설비나 시설을 방문했는지 여부와 그 정도
 - 2)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의 경우, 법률적 등록문서, 계약문서 또는 기타의 유 형적인 증거를 검사했는지 여부
 - 3) 면담을 수행한 사람들의 이름과 직위, 직책 및 평가대상과의 관계
 - 4) 재무정보(문단 54, 56)

- 5) 세무정보(문단 55)
- 6) 산업 자료
- 7) 시장 자료
- 8) 경제 자료
- 9) 기타의 실증적 정보
- 10) 회사가 제공하였거나 회사와 관련된 문서 또는 기타의 정보 원천
- 54. 가치평가에 이용된 재무정보에 평가자가 감사, 검토 또는 기타의 인증업무를 수행하여 보고한 재무제표나 평가자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포함된 경우, 평가자는 그 사실 및 관련 보고서의 종류를 기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이 없다면 이러한 사실 역시 기술하고, 회사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기술하여야 한다.
- 55. 가치평가에 이용된 재무정보에 세무신고서류 상의 정보 또는 세무신고서류에서 도출되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평가자는 이러한 세무관련 정보에 대하여 해당 세무신고서류, 평가자와 세무대리인과의 관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평가자가 이러한 세무관련 정보에 대하여 감사, 검토 또는 기타의 인증업무나 작성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기술하고 회사의 세무관련 정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기술하여야 한다.
- 56. 가치평가에 이용된 재무정보가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로부터 도출되었고, 해당 재무제표가 감사, 검토 또는 기타 인증업무나 외부전문가에 의한 작성대상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평가자는 평가보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 재무제표의 종류
 - 평가자는 해당 재무정보에 대하여 가치평가 목적으로 감사, 검토 또는 기타의 인증업무나 작성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재무정보에 대하여 어떠 한 책임도 없다는 사실

평가대상회사 및 관련 비재무정보의 분석

57. 평가자는 문단 27에 열거된 관련 비재무정보 및 그 논의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재무제표와 재무정보의 분석

- 58. 이 부분에서는 문단 29에 열거된 관련 정보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1) 재무정보의 정상화 또는 지배력 여부에 따른 조정의 논거
 - 2) 현재의 성과를 과거의 성과와 비교
 - 3) 성과를 산업추세나 표준과 비교(입수 가능한 경우)

고려한 제반 평가접근법과 방법

59. 여기서는 평가자가 문단 31의 세 가지 평가접근법에 대하여 고려한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실제 적용한 평가접근법과 방법

- 60. 이 부분에서는 평가자가 각 평가접근법 별로 적용한 평가방법, 그리고 그 적용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61. 평가자는 각 평가접근법 별로 적용한 평가방법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1) 이익기준 평가접근법
 - 대표적인 효익 흐름의 구성
 - 적용한 평가방법, 적절한 할인율이나 자본화율을 선택할 때 고려하였던 가 장 관련이 깊은 위험요소의 요약
 - 문단 33에 제시된 기타의 요소들
 - 2) 자산기준 평가접근법 또는 원가기준 평가접근법
 - 자산기준 평가접근법 : 관련 대차대조표 자료에 대하여 평가자가 수행한 조정사항
 - 원가기준 평가접근법: 적용한 원가의 유형, 원가의 추정방법.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이 평가접근법에서 감가상각과 진부화의 형태 및 관련 상각액, 그리고 그 추정방법
 - 3) 시장기준 평가접근법
 - 유사 상장기업 비교법: 선정된 유사기업 및 선정 절차, 적용된 가격배수 및 적용방법과 그 선정의 논거, 가격배수가 조정되었다면 그러한 조정의 논거
 - 유사 기업거래 비교법: 적용된 매각거래 및 가격배수, 적용방법 및 선정논 거, 만약 가격배수가 조정되었다면 그러한 조정의 논거
 - 평가대상기업 내의 유사 매각거래 비교법: 평가대상기업 내의 유사 매각거래 및 적용방법, 그리고 해당 매각거래를 제3자간의 거래를 대표하는 것으로 결정한 논거
- 62. 평가자가 이 기준의 평가방법과 더불어 경험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경우, 경험적 평가를 위해 이용한 자료의 원천과 그러한 평가를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평가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문단 39).

가치평가 조정사항

- 63.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문단 40).
 - 1) 시장성의 결여에 따른 할인 등 가치평가를 위해 적용한 조정사항을 밝힌다.
 - 2) 조정을 행한 논거 및 금액이나 비율을 조정할 때 고려하였던 요소를 기술한다.
 - 3) 조정 전의 평가액을 기재한다.

비영업자산 및 유휴 영업자산 등

64. 평가대상이 사업, 사업의 지분 또는 유가증권일 경우, 관련 비영업자산, 비영업부채,

유휴 중이거나 결함이 있는 영업자산을 밝히고 가치평가에 미친 영향을 기술한다 (문단 41).

보고서 이용 상의 유의사항

- 65. 평가보고서에는 보고서 이용 상의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술은 평가자가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침이 되었던 요소들을 요약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평가보고서에 포함된 분석이나 의견, 가치의 평가는 문단 18의 특정한 가정과 제약조건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분석과 의견, 평가는 평가자의 개인적 판단과 견해에 의한 것임
 - 2) 평가보고서에 포함된 경제 및 산업자료는 평가자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다양한 인쇄물이나 또는 기타 매체로부터 입수된 것임. 평가자는 이들 자료를 입증하기 위한 어떠한 보강적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음
 - 3) 가치평가업무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을 준수하 여 수행하였음
 - 4) 평가보고서의 용도와 이용자에 대한 제약을 명시함. 즉, 평가보고서는 허용된 이용자 이외의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며, 그렇게 이용되어서도 안됨(문단 49)
 - 5) 평가자는 평가업무 수행 중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였음(외부전문가란 평가자에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전문가를 말하며 이 경우 해당 전문가를 밝혀야 하고, 평가보고서에는 평가자가 외부전문가의 업무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책임의 수준도 기술하여야 함)
 - 6) 평가자는 평가보고서일 후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평가보고서 또는 가치의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갱신할 의무가 없음

평가자에게 제공된 정보에 관한 경영자확인

66. 평가자는 가치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경영자가 제공한 정보와 관련하여 문서화된 확인서를 입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경영자 확인서를 입수할 것인지 여부는 평가자의 판단에 따른다.

평가자의 적격성

67. 평가보고서에는 평가자의 적격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가치평가의 조정내역과 추정결과

- 68. 평가자는 평가대상과 관련된 평가자의 다양한 추정치에 대하여 평가자가 실시한 조 정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 가치의 평가를 뒷받침하는 논거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평가대상과 평가기준일도 기재)
 - 2) 평가자는 보고서에 명시된 목적만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따라서 가치

평가의 결과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어서는 안됨

- 3) 가치평가업무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을 준수하 여 수행하였음
- 4) 가치의 추정결과는 가치의 평가 형태로 표명되었음
- 5) 수행한 업무의 범위 또는 분석에 이용한 자료, 그 제약이나 제한 등
- 6) 가치의 평가결과(단일값 또는 범위)(문단 19)
- 7) 가치의 평가결과는 가정이나 제약조건(문단 18), 그리고 보고서 이용 상 유의 사항(문단 65)의 제약을 받음
- 8) 평가자(법인일 경우 평가기관 및 대표자)의 명칭과 서명
- 9) 보고서일
- 10) 평가자는 평가보고서일 후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평가보고서나 가치의 평가결 과를 갱신할 의무가 없음
- 69. 다음은 가치평가보고서의 예시이다. 평가자는 이 예시를 기준으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다.

"우리는 20X1년 3월 31일 현재 "갑" 주식회사의 지분(또는 유가증권, 무형자산 등)에 대하여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000의 목적을 지원하기위하여만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치평가의 결과는 이 보고서에 명시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 보고서에 명시된 이외의 자는 어떠한 용도에도 이 보고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는 가치평가업무의 수행(또는 분석에 이용될 자료의 입수)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하 제약사항이나 제한사항을 기술)

이 보고서에 기술된 우리의 분석에 기초한 결과, "갑" 주식회사의 20X1년 3월 31일 현재 주식(또는 유가증권, 무형자산 등)의 가치는 0000원(또는 금액 범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이 보고서의 별첨 xx에 기재된 가정과 제약조건 및 보고서 이용 상의 유의사항에 따라 도출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평가보고서일 후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이 보고서 또는 가치평가 결과를 갱신할 의무가 없습니다.

서명 OO 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홍 길동 일자 20X1. 4. 20

별첨과 부표

70. 가치평가보고서의 별첨과 부표는 평가보고서를 보충하기 위한 정보나 기타의 요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정이나 제약조건 그리고 보고 서 이용 상의 유의사항은 별첨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요약평가보고서

- 71. 요약평가보고서는 가치평가보고서에 제공된 정보를 보다 간결하게 제시하기 위해 작성된다. 따라서 요약평가보고서에는 가치평가보고서와 동일한 수준의 세부적인 정보가 포함되도록 요구되지 않으나,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은 포함되어야 한다.
 - 1) 의뢰인에 관한 사항
 - 2) 평가된 가치의 목적과 용도
 - 3) 평가된 가치의 의도된 이용자
 - 4) 평가대상회사
 - 5) 평가대상의 기술
 - 6) 평가대상이 지분인 경우, 지배력이 있는지 여부와 시장성의 정도
 - 7) 평가기준일
 - 8) 보고서일
 - 9) 보고서의 유형(즉, 요약평가보고서라는 사실, 문단 48)
 - 10) 가치에 대해 적용한 전제조건
 - 11) 적용된 가치기준
 - 12) 가치평가에 이용된 정보의 원천
 - 13) 가정과 제약조건들(문단 18)
 - 14) 평가자의 업무수행범위나 분석을 위한 자료입수에 있어서의 제약이나 제한(문 단 19)
 - 15) 가치평가업무에 채택된 가설적 상황 및 그 채택기준(문단 22)
 - 16) 가치평가업무에 전문가의 업무가 이용된 경우(문단 20), 평가자가 그 결과를 이용한 방법, 그리고 평가자가 외부전문가의 업무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책임의 수준에 대한 설명
 - 17) 적용한 평가접근법과 방법
 - 18) 후속사건의 기술(문단 43에서 말하는 특정한 상황에서)
 - 19)타 법규나 기준의 요구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것과 다르게 평가를 수행하 거나 보고하는 경우 그 내용(문단 10)
 - 20) 보고서 이용 상의 유의사항(문단 65)
 - 21) 평가자(법인일 경우 평가기관 및 대표자)의 명칭과 서명
 - 22)문단 68 및 문단 69에 논의된 바와 같이 가치평가의 조정내역 및 이에 따른 가치평가 결과의 요약
 - 23) 평가자는 보고서일 후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가치평가보고서나 가치의 평가결과를 갱신할 의무가 없음

72. 별첨과 부표는 요약평가보고서를 보충하기 위한 정보나 기타의 요구정보(문단 70)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정이나 제약조건 그리고 보고서 이용 상의 유의사항은 별첨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가치산정보고서

- 73. 문단 48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가치산정보고서는 가치산정업무의 결과를 보고할 때만 이용되는 보고서이며, "가치산정보고서"라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평가자는 문단 65에 제시된 가치평가보고서 이용 상의 유의사항을 가치산정업무에 맞게 조정하여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74. 가치산정업무에 이용된 가설적 상황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채택기준(문단 22), 다른 법규나 기준에 의한 평가절차나 보고의 예외사항(문단 10), 가치산정업무에 적용된 가정이나 제약조건(문단 18)을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문단 22). 가치산정업무에 외부전문가의 업무가 이용된 경우(문단 20), 평가자가 그 결과를 이용한 방법, 그리고 평가자가 외부전문가의 업무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책임의 수준에 대한설명을 기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또한 후속사건에 대한 기술도 포함되어야 한다(문단 43의 특정한 상황에서).
- 75. 별첨과 부표는 가치산정보고서를 보충하기 위한 정보나 기타의 요구정보(문단 72)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정이나 제약조건 그리고 보고서 이용 상의 유의사항은 별첨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 76. 가치산정보고서에는 산정된 가치를 요약하는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 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가치산정을 위한 특정의 절차가 수행되었음(가치산정의 대상과 산정기준일도 기재)
 - 2) 가치산정절차와 수행한 업무의 범위(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부분을 언급)
 - 3) 평가자는 보고서에 명시된 목적만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따라서 가치 산정의 결과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는 이용될 수 없다는 사실 등 가치산정의 목적을 기술
 - 4) 가치산정업무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을 준수하 여 수행하였음
 - 5) 가치산정 대상이 지분인 경우, 지배력이 있는지 여부와 시장성의 정도를 기술
 - 6) 가치의 추정결과는 가치의 산정 형태로 표명되었음
 - 7) 가치산정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예를 들어.
 - ① 가치산정업무는 가치평가업무에서 요구되는 모든 절차를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 ② 가치산정업무를 가치평가업무의 형태로 수행했다면 그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
 - 8) 가치의 산정결과(단일값 또는 범위의 형태)

- 9) 평가자(법인일 경우 평가기관 및 대표자)의 명칭과 서명
- 10) 보고서일
- 11) 평가자는 보고서일 후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가치산정보고서나 가치의 산정결 과를 갱신할 의무가 없음
- 77. 다음은 가치산정보고서의 예시이다. 평가자는 이 예시를 기준으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다.

"우리는 20X1년 3월 31일 현재 "갑" 주식회사의 지분(또는 유가증권, 무형자산 등)에 대하여 가치산정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치의 산정을 위해 수행한 절차는 이 보고서의 [..]에 기술한 바와 같습니다. 이 보고서는 000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하여만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치산정의 결과는 이 보고서에 명시한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 보고서에 명시된 이외의 자는 어떠한 용도에도 이 보고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적용한 특정의 가치추정접근법과 방법, 그리고 우리가 수행할 가치추정절차의 범위에 대하여 이 업무의 요청자인 "을" 주 식회사와 상호 합의하였습니다. 가치산정업무는 가치평가업무에서 요구되는 모든 절차가 포함되지는 아니합니다. 또한 가치산정업무를 통하여 산정된 가치는 가치평 가업무의 형태로 수행했다면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상기 문단에서 언급한 상호 합의된 절차에 따른 결과, "갑" 주식회사의 20X1년 3월 31일 현재 지분(또는 유가증권, 무형자산 등)의 가치는 0000원(또는 금액범위)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치산정의 결과는 이 보고서의 별첨 xx에 기재된 가정과 제약조건 및 보고서 이용 상의 유의사항에 따라 도출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고서일 후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이 보고서 또는 가치산정 결과를 갱신할 의무가 없습니다.

서명 OO 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홍 길동 일자 20X1, 4, 20

구두에 의한 보고

78. 가치추정업무의 결과는 구두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평가자는 구두에 의한 보고를 할 때 평가자와 보고를 받는 자 사이에 발생할 수도 있는 오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업무의 범위, 가정, 제약조건 및 그 수행결과와 관련하여 평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평가자는 의뢰인에게 구두로 보고한 내용

을 조서형태로 문서화 하여야 한다.

부칙(2008. 8. 28)

-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의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가치추정업무부터 적용한다. 다만, 평가자가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 기준의 시행일 현재 진행되고 있 는 업무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보론 1.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의 제정 경위

1. 배경

- 1)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이 사업, 사업의 지분, 유가증권, 무형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한 가치평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준거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였음
- 2) 본회가 국제회계사연맹(IFAC)의 중기사업계획(2009-2011)을 검토한 결과, 가치평 가서비스와 관련된 국제기준의 발표시기나 그 여부가 불투명함
- 3) 반면, 미국의 AICPA는 2007년 6월에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Statement on Standards on Valuation Services No. 1, Valuation of a Business, Business Ownership Interest, Security, or Intangible Asset)를 통하여 이러한 업무의 수행기준을 제정, 발표하였음

2. 목적

- 첫째, 우리의 자본시장에서 기업합병, 인수, 주식거래, 사업양수도 등의 활동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가치평가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며,
- 둘째, 「증권거래법 시행령」제 84조의7 및 제84조의8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합병, 자산양수도, 주식교환·이전, 분할합병 등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하 는 경우 회계법인 등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를 요구하고 있는바,

이에 본회는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치평가서비스의 품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을 제정하였음.

3. 공개초안의 작성

1) 공개초안 작성 참고자료 등

본회는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의 공개초안을 작성할 때 AICPA의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의 주요 내용과 더불어, 우리의 법규와 제도, 실무 등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였음. 예를 들어,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비율평가나 자산양수도에 따른 가치평가업무와 같이 법규 등에 의한 가치평가업무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보고서를 예시하였음. 또, 유형자산(tangible assets)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업무도 이 기준의 범위에 포함시켰음

2)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TF의 활동

본회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TF는 금융감독원,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전문가, 본회의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가치평가서비스의 실무와 방법론 그리고 관련 문헌의 조사 및 내부 토론을 거쳐 이 기준에 대한 기초안을 작성하였음

4.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

- 1) 이 기준의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청취 기간 중 회계법인, 한국회계기준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제출이 있었음
- 2)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TF는 이 의견들에 대하여 문단 별로 축조 심의한 후, 최종 기초안을 작성하였음

5.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 본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는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TF의 최종 기초안에 대하여 수차례의 심의를 거쳐 이 기준의 본문내용을 의결하였음(2008.8.28)

6. 시행

 이 기준은 2008년 9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업무부터 시행함. 다만, 가치평가자가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 기준의 시행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음

7.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의 주요 내용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즉 가치평가자가 ① 회사의 요청에 따라 사업, 사업의 지분, 유가증권, 무형자산, 유형자산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가치평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② 회사의 재무보고를 위하여 지분, 유·무형자산 등 주요 항목의 공정가치 등을 평가할 때(예를 들어 회사가 IFRS에 따른 공정가치를 평가하기위해 가치평가자에게 그 업무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③ 「증권거래법」의 규정에따라 외부평가기관으로서 가치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적용될 수 있음

단, 가치평가자가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나 검토의 일부분으로 회사가 제시한 공정가치를 평가할 때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회계감사기준과 재무제표 등에 관한 검토업무기준을, 회사가 스스로 가치를 평가한 후 감사인에게 이에 대한 인증 (assurance)을 요청할 때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추정재무정보 검토업무기준 등 관련 기준을 각각 적용함

2) 기준의 주요사항 요약

- ① 가치평가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항목의 제시 이 기준은 가치평가자가 사업, 사업의 지분, 유가증권, 무형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가치평가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됨
- ② 가치평가서비스의 유형의 구분 가치평가서비스(valuation service)는 가치평가업무와 가치산정업무로 구분함. 가치평가서비스는 가치추정업무라고도 함. 가치평가업무와 가치산정업무의 구 체적인 차이점은 이 기준의 문단 21 참조

- ③ 가치추정접근법(approach)과 그 세부적인 방법(method) 가치평가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다음 세 가지의 일반적인 접근법을 제시함(문 단 31. 각 접근법 별로 세부적인 방법은 이 기준의 문단 33 내지 문단 39에서 기술함)
 - 이익기준 평가접근법
 - 자산기준 평가접근법 또는 원가기준 평가접근법
 - 시장기준 평가접근법
- ④ 업무수행 결과의 보고
 - 가치평가업무의 경우에는 가치평가보고서를, 가치산정업무의 경우에는 가치산정보고서를 작성함
 - 가치평가업무와 가치산정업무는 업무간 성격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각 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에도 일부 차이가 있음(이 기준의 문단 47 내지 문단 77 참고)
- ⑤ 「증권거래법」등 법률이나 기타의 규정에 따라 가치평가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그 목적에 맞게 이 기준의 주요 사항을 반영하여 보고서 사례를 제시함(보론 2)
- ⑥ 후속사건의 고려, 문서화 등 가치평가자에 대한 일반적인 고려사항을 제시함
- ⑦ 가치평가서비스의 수행과 관련된 주요 용어의 해설을 제공함(보론 4)

3) 가치평가자의 유의사항

- ① 가치평가자는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이 적용되는 업무와 그 적용이 배제되는 업무를 구분하여야 함(문단 1, 문단 5 내지 문단 9참고)
- ② 가치평가자가 가치평가서비스를 수행할 경우 이 기준뿐만 아니라 본회가 제정한 공인회계사윤리기준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보론 2. 법규 등에 의한 평가업무의 보고서 예시

가치평가자는 이 기준 문단 10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평가자는 관련 법규에서 별도로 정함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의 가치평가절차와 보고서 예시를 준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가 합병, 주식교환, 이전, 분할, 자산 및 영업 양수도를 하고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평가자는 다음의 예시처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평가자는 이 기준 문단 51의 항목을 고려하여 각 업무의 개별 상황에 맞게 예시문구를 적절하게 수정하도록 한다.

1. 합병비율에 대한 평가보고서

사례: 상장법인인 "갑" 주식회사가 비상장법인인 "을" 주식회사를 합병할 때 (주식교환, 이전, 분할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합병비율 평가보고서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2007년 11월 X일

우리는 "갑" 주식회사(이하 "합병법인"이라 함)가 "을" 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와 2007년 0월 0일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을 평가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상기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비율에 대한 우리의 평가결과는 이보고서에 명시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 보고서에 명시된 이외의 자는 어떠한 용도에도 이 보고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만약, 관련 법령과 규정의 제약으로 인해 가치평가자가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합병비율을 평가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할 수 있다]

우리는 합병법인이 신고한 합병비율 1: a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제시한 2007년 0월 0일 기준의 재무제표,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2007년 0월 0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합병법인의 주가자료 및 피합병법인의 2007년과 2008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추정재무제표 등을 기초로 하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그리고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82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의 산정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기술된 우리의 분석에 기초한 결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OOO(액면가액 5,000원)과 △△△원(액면가액 5,000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 합병당사회사의 합병비율은 1: b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이 보고서의 별첨 xx에 기재된 가정과 제약조건 및 보고서 이용 상의 유의사항에 따라 도출된 것입니다. 또 우리의 평가결과는 보고서일인 2007년 11월 X일 현재로만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고서일 이후 이 평가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는 피합병법인의 영업환경이나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가 평가한 합병비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사항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고서일후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이 보고서 또는 합병비율의 평가결과를 갱신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 보고서에 기술된 절차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가 아니므로 우리는 이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우리가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다면 이보고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추가적인 발견사항, 변경사항 또는 기타 예외사항이 발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서명 00 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홍 길동

2. 자산양수도가액에 대한 평가보고서

사례 : 상장법인인 "갑" 주식회사와 비상장법인인 "을" 주식회사 간의 자산양수도가액을 평가할 때

자산양수도가액 평가보고서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2007년 11월 X일

우리는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 간에 2007년 0월 0일에 체결된 자산양수도 계약에 따라 "을"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병" 주식회사의 보통주 X백만 주를 평가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상기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갑" 주식회사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병"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우리의 가치평가 결과는 이 보고서에 명시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보고서에 명시된 이외의 자는 어떠한 용도에도 이 보고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우리는 상기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우리가 적용한 특정의 평가접근법과 방법, 그리고 우리가 수행할 평가절차의 범위에 대하여 "갑" 주식회사 또는 "병" 주식회사가 제시한미래 추정재무자료 및 관련 근거자료, 그리고 기타 외부연구기관의 시장전망 자료 등을 이용하여미래 현금흐름의 할인방법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기술된 우리의 분석에 기초한 결과, "병" 주식회사의 2007년 11월 X일 현재 주식의 가치는 OOOO원(또는 금액의 범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이 보고서의 별첨 xx에 기재된 가정과 제약조건 및 보고서 이용 상의 유의사항에 따라 도출된 것입니다. 우리의 추정결과는 보고서일인 2007년 11월 X일 현재로만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고서일 이후 이 평가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는 "병" 주식회사의 영업환경이나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가 추정한 주식가치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사항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고서일 후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이 보고서 또는 주식가치의 추정 결과를 갱신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 보고서에 기술된 절차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가 아니므로 우리는 이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우리가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다면 이 보고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추가적인 발견사항, 변경사항 또는 기타 예외사항이 발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서명 00 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홍 길동

보론 3. 가치평가서비스에 대한 가정과 제약조건의 예시

가치평가자의 보고서에는 업무수행의 가정과 제약조건들이 열거되어야 한다. 이 보론은 이러한 가정과 제약조건들을 예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가치평가자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예시문구를 수정할 수 있다.

가치평가업무의 가정과 제약조건의 예시(가치산정업무의 경우 적절히 수정)

- 1. 가치의 평가결과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술된 목적만을 위하여 타당함
- 2. 우리(또는 "평가자", 이하 동일함)는 가치평가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재무제표나 기타의 재무정보는, (이 정보에 대하여 평가자가 별도로 언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정보들이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모두 그리고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함이 없이 제공받은 그대로 수용하였음. 우리는 이들 정보에 대하여 감사, 검토 또는 작성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들 정보에 대하여 감사의견 등 어떠한 형태의 인증도 표명하지 아니함
- 3. 공공정보와 산업 및 통계자료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천에서 입수하였음. 그러나 우리는 이들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하여 어떠한 기술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음
- 4.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은 회사가 예측한대로 발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사가 예측한 성과에 대하여 어떠한 확신도 제공하지 아니함. 즉, 예측성과와 실제 결과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측결과의 달성 여부는 경영진의 행동과 계획 그리고 경영진이 전제한 가정에 따라 가변적임
- 5. 우리의 가치평가 결과는 현재 경영진의 전문성과 효과성 수준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사업매각, 구조조정, 교환, 주주의 자본 감축 등에 의해 회사의 성격이 중요하게 또는 유의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것임
- 6. 이 보고서 및 가치의 평가결과는 우리의 의뢰인과 이 보고서에서 언급한 특정의 목적만을 위한 것임. 따라서 제3자의 어떠한 목적이나 이 보고서에서 언급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음. 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 및 가치의 평가결과는 어떠한 형태로든 투자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그렇게해석되어서도 아니 됨. 가치의 평가결과는 회사가 제공한 정보와 기타의 원천을 근거로 평가자가 고려한 의견만을 나타내는 것임
- 7. 가치의 평가결과, 가치평가 외부전문가의 명칭이나 그 직무의 언급 등을 포함하여 이 보고서의 어떠한 부분도 평가자의 서면동의 및 승인 없이 광고매체, 투자홍보, 언론매체, 우편, 직접교부 또는 기타의 통신 수단을 통하여 공중에게 전파될 수 없음
- 8. 사전에 문서로 협약되지 않는 한 이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정 증언이나 진술 등 평가자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할 수 없음
- 9. 우리는 환경문제에 대한 자문인이나 감사인이 아니므로 환경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한 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없음. 이 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로서 이와 같은 환경문제에 관한 의무가 존재하는지 또는 환경문제의 범위나 가치평가에 대한 영향을 알고 싶은 경우, 환경평가에 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얻기를 권고함. 평가자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지 않으며 가치평가대상에 대하여도 이에 대한 어떠한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음

- 10. 우리는 회사가 환경문제에 관하여 현재 또는 장래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그러한 의무의 부담범위에 대하여 독립적인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우리의 가치평가는 회사 또는 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문제 전문가가 우리에게 보고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의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환경문제는 이들이 우리에게 실제 또는 추정된 금액으로 보고한 내용으로 국한됨. 그러한 내용은 보고서에 제시되었음.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검증절차도 없이 동 정보를 신뢰하였으며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이나 기술을 제시하지 아니함
- 11. 우리는 회사가 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업원의 채용, 근무에 관한 규제의 적용대상 여부나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대상에 대하여특정의 질문이나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음. 따라서 우리의 가치평가 결과는 이러한 규정의 위반시 가치평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임
- 12. [다른 법규나 기준상 가치평가 절차나 보고의 예외가 있을 경우 예시문구] "이 보고서의 가치평가 결과는 XXX법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 부분이 있으므로 한국 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과 차이가 있습니다"
- 13. 이 보고서의 어떠한 내용도 평가자 이외의 자가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으며, 우리는 이러한 승인 없는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음
- 14.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우리는 미래의 법률이나 규정이 평가대상회사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하여 어떠한 고려나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음
- 15. 우리의 업무에 경영자가 작성한 추정재무정보가 이용된 경우, 우리는 그러한 추정 재무정보를 조사하거나 작성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음. 따라서 우리는 추정재무정보나 이와 관련된 가정에 대하여 감사의견 등 어떠한 형태의 인증도 표명하지 아니함. 사건이나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추정재무정보와 실제결과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차이가 중요할 수 있음
- 16. 우리는 회사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의 영업전망에 대하여 현재의 경영진에 대하여 질문을 수행하였음
- 17. 우리는 별도로 언급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사업에 이용되는 모든 시설·설비나 부동산, 투자자산의 가치나 이용가능성 그리고 기타의 자산이나 부채(단, 이 보고서에서 다르게 언급된 사항은 제외함)에 관하여 지분소유자, 경영자, 기타 제3자의 진술에 의존하였음. 우리는 사업에 이용되는 모든 자산들이 담보나 사용 상의 제약이 있는지 여부 또는 회사가 모든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음

보론 4. 용어의 해설

이 기준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의 해설은 다음과 같다

용어	해설
가설적 상황	실제와 반대이거나 반대일 가능성이 있지만 분석의 목적으로
(hypothetical condition)	상정하는 상황을 말한다.
가치기준	예를 들어 공정 시장가치, 공정가치, 투자가치 등 가치추정업무
(standard of value)	에서 적용될 가치의 유형을 말한다.
가치산정업무	가치산정업무란 평가자와 의뢰인이 가치평가의 대상에 대하여
(calculation engagement)	평가자가 적용할 가치산정접근법과 방법 및 절차수행의 범위에
	대해 상호 동의하는 업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가치산정업무
	에서는 가치평가업무에서 요구되는 모든 절차가 포함되지는 않
	는다. 따라서 동일한 가치추정대상에 대하여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한 때와 가치산정업무를 수행한 때는 서로 다른 결과가 발
	생할 수가 있다. 평가자는 가치산정업무의 수행결과를 가치의
	산정(calculated value) 형태로 나타내며, 단일의 금액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로도 나타낼 수 있다.
가치의 전제조건	예를 들어 계속기업과 같이 대상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될
(premise of value)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 거래환경에 대한 가정을 말한다.
가치추정업무	가치추정업무는 사업, 사업의 지분, 유가증권, 무형자산, 유형자
(engagement to estimate	산 등에 대하여 그 가치를 추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치의 추
value)	정(an estimation of value)은 가치의 평가(conclusion of value)
	또는 가치의 산정(calculation of value) 형태로 표현된다. 가치
	추정업무는 가치평가서비스라고 한다.
가치추정의 가정	가치추정업무를 수행할 때 특정 추정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기
(valuation assumptions)	본적인 가정을 말한다.
가치평가서비스	"가치추정업무"참조
(valuation service)	
가치평가업무	가치평가업무는 평가자가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에 제시된
(valuation engagement)	가치평가절차를 적절하게 적용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추정하
	는 업무를 말하며, 평가자는 상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가치
	평가접근법과 방법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다. 평가자는 가치
	평가업무의 수행결과를 가치의 평가(a conclusion of value) 형
	태로 나타내며, 단일 금액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로 나타낼 수
	도 있다.
가치평가자(또는 평가자)	가치평가자란 가치추정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
(valuation analyst)	법인을 말한다.
계속기업가치	사업체가 미래에도 사업을 계속할 것으로 예측될 때의 가치.

용어	해설
(going concern value)	계속기업가치 중 무형적인 부분은 해당 사업체가 훈련된 종업
	원, 영업설비, 필요한 라이선스, 내부적인 제도나 절차 등을 구
	비하고 있고 이들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발생된
	다.
공정시장가치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당사자와 구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
(fair market value)	는 당사자가 접근이 제한되지 아니한 공개 시장에서 공정하게
	거래를 할 것으로 보는 가격. 양 당사자 모두 강제로 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어야 하며, 관계되는 사실에 대한 합리
	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공정가치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fair value)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백분율 재무제표	각 계정과목의 금액이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로 표시된 재무제
(common- size	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는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
statements)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표시된다.
분할이익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사업의 이익이나 현금흐름의 일
(profit split income)	정비율을 평가대상 무형자산에 배부하고, 잔여액은 유형자산과
	기타의 무형자산에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비영업자산	사업체의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한 자산을 말한다.
(nonoperating assets)	
사업	도소매, 제조, 서비스, 투자 등 경제적인 활동을 추구하는 실체
(business enterprise)	를 말한다.
사업위험	재무위험 이외의 기타 요인에 의하여 사업체의 미래수익이 예
(business risk)	상한 대로 실현될 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의 정도를 말한다.
사업의 지분	사업의 지분이란 기업의 소유권에 대한 일정 몫을 의미한다.
(business ownership	
interest)	
영업권	명성, 고객 충실도, 지리적 위치, 제품의 종류, 기타 이와 유사
(goodwill)	한 사항 등 별도로 분리하여 파악되지 아니하는 요소로부터 발
	생되는 무형자산을 말한다.
유휴 영업자산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규모를 초과하는 영업자산을
(excess operating assets)	말한다.
이익의 자본화	이익기준 평가접근법에서 대표적 단일기간의 경제적 효익을 자
(capitalization of	본화율로 나누어 가치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earnings)	
자본화	단일기간의 경제적 효익을 가치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capitalization)	

용어	해설
자본화 요소	단일기간의 예상 경제적 효익을 가치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용
(capitalization factor)	되는 특정한 배수 또는 제수를 말한다.
자본화율	단일기간의 예상 경제적 효익을 가치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용
(capitalization rate)	되는 제수. 일반적으로 백분율로 표시된다.
잔여이익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유형자산과 기타의 무형자산에
(residual income)	대한 자본비용을 공제한 후의 이익이나 현금흐름을 말한다.
정상이익	예외적인 항목을 제거하고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경상
(normalized earnings)	적이거나 경제적 효익이 없는 자산, 기타 비정상적인 항목을
	제거한 이익을 말한다.
정상화	예를 들어 재무제표의 경우 예외적인 항목을 제거하고 비교가
(normalization)	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영업자산과 비영업부채, 비경상적이거
	나 경제적 효익이 없는 자산, 기타 비정상적인 항목을 제거하
	는 것을 말한다.
조정순자산법	자산기준 평가접근법의 하나로서, 대차대조표의 부외항목, 무형
(adjusted net asset	자산, 우발사항 등이 포함된 모든 자산과 부채가 공정 시장가
method)	치로 조정되는 것을 말한다. 조정순자산법은 adjusted book
	value method라고도 한다.
증분이익	특정 무형자산이 있을 때의 이익이나 현금흐름과 그것이 없을
(incremental income)	때의 이익이나 현금흐름과 비교할 경우, 평가대상 무형자산에
	귀속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이익이나 현금흐름을 말한다.
지배력	사업체의 경영이나 정책을 지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control)	한다.
지배력 조정	지배력이 있는 지분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조
(control adjustment)	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시장의 일반적인 규모를 초과
	하는 소유자 보상에 대하여 이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을 말한
	다.
지배력 할증, 할인	지배력 할증이란 지배력이 있는 지분의 지배력을 반영하기 위
(control premium,	하여 지배력이 없는 지분의 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이나 일정한
discount for lack of	비율을 말하며, 할인의 경우에는 그 반대이다.
control)	
초과이익	초과이익은 자산의 적절한 투자수익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
(excess earnings)	는 경제적 효익을 금액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투자가치	투자가치란 투자에 대한 개인의 요구와 기대에 근거한 해당 투
(investment value)	자자의 가치를 말한다.
투하자본	투하자본이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합한 것을 말한다. 타인
(invested capital)	자본은 전형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모든 부채를 말하지만, 이

용어	해설
	자가 지급되는 장기부채만을 의미할 때도 있다.
회피가능 로열티법	상호나 상표와 같은 무형자산을 평가할 때 이용되는 가치평가
(relief from royalty	방법으로서, 자산의 취득자가 향유하는 유일한 가치는 그 자산
method)	을 사용할 때 지급할 로열티를 공제받거나 회피 가능하다는 데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 방법에 따르면 무형자산의
	가치는 회피가능 로열티를 현재가치로 나타내어 공정시장가치
	를 평가한다.